

용산국가공원 관련 용어 정리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용산공원정비구역에 관한 중요 정책사항을 심의하는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의 위원회

* 용산공원조성추진위원회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둠

□ 용산공원조성추진기획단

용산공원 조성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사무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구성·운영

□ 용산기지 MP(Main Post, 메인포스트)

용산미군기지(용산 계리슨) 중 이태원로를 경계로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한미연합사와 주한미군사령부 주둔지역 명칭을 의미(24만평)

□ 용산기지 SP(South Post, 사우스포스트)

용산미군기지 중 이태원로를 경계로 남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드레곤힐 호텔과 미군 병원·숙소·학교 등 공공시설이 입지하고 있는 지역 명칭을 의미(57만평)

□ 용산공원정비구역

용산공원과 그 주변지역 등을 계획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특별법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 공원주변지역

□ 용산공원조성지구

본체부지에 지정된 지구(용산공원의 조성에 필요한 경우 본체부지의 인접지역을 포함할 수 있다)

□ 복합시설조성지구

도시의 기능증진과 토지의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상업·업무·주거·문화 등 복합용도로 조성하기 위하여 주변산재부지에 지정된 지구

□ 공원주변지역

용산공원조성지구, 복합시설조성지구에 접하는 지역으로서 용산공원 조성으로 난개발 등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중 계획적인 관리가 필요한 지역

□ 본체부지

미합중국군대의 본부 및 지원부대 등이 집단적으로 입지한 일단의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 주변산재부지

본체부지와 격리되어 그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지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지

□ 용산공원

용산공원조성지구에 국가가 조성하는 공원

□ 용산공원시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 각 목의 시설과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시설 등

* 도로, 광장, 조경시설, 휴양시설, 유희시설, 운동시설, 교양시설, 편익시설 등

□ 마스터플랜(Master Plan)

- 마스터플랜은 설계분야에서 쓰이는 일반적인 용어로서 기본계획이라고도하며, 설계안의 전체 배치도를 보여주는 그림으로 나타냄

기본계획

어떠한 공원으로 조성하면 좋을지에 대한 기본방향(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단계

기본설계

기본계획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중심으로 구체적으로 설계안을 발전시키는 단계, 공간의 배치 및 규모가 구체적으로 확정되는 단계로 정확한 축척을 사용하여 도면 작성

공원조성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절차이며 공원 계획에 관한 승인신청 도서를 작성하여 허가를 받는 단계

실시설계

설계안이 현장에서 시공될 수 있도록 시공상세도를 작성하고 공사비 내역을 산출하는 단계

실시계획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필요한 법적 절차이며 공원 공사를 위한 실시설계 도서를 제출하여 설계안대로 공원이 조성되는 것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 승인을 받는 단계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 시 환경보전계획과 부합여부 확인 및 대안 설정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계획 적정성 및 입지 타당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 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을 할 때에는 해당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존방안을 마련하는 것

□ SOFA(Status Of Forces Agreement, 한미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으로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